

[별표 1]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

해당표준번호	SPS-KFGIA 001-1749
--------	--------------------

해당표준명	방화유리
-------	------

제정연월일	2008년 08월 04일
-------	---------------

개정연월일	2020년 05월 26일
-------	---------------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I. 제품분야

1. 일반 심사기준

가. 품질경영 관리

심사사항	구비요건
1)사내표준화·품질 경영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책임자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은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요구 수준이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2)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경영을 총괄하는 품질경영부서(임직원 10인 이하 기업은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안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자재 관리

심사사항	구비요건			
	검사항목	자재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p>표준에서 정한 주요 자재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p> <p>1. 방화유리</p> <p>1)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p> <p>2) 접합유리 (완제품해당)</p> <p>3) 필름</p> <p>4) 세라믹결정화 유리</p> <p>(1)규사</p> <p>(2)장석</p> <p>(3)산화리튬</p> <p>(4)이산화지르코늄</p> <p>(5)이산화티타늄</p> <p>(6)오산화인</p> <p>2. 금속제 창틀, 문틀</p> <p>1) 강판</p> <p>2) 스테인리스강판</p>	<p>표준에 따른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자재관리 목록(원·부자재, 부품 등)은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자재의 품질기준 및 안전성은 생산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p>	<p>자재의 검사방법 및 항목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야 한다.</p>	<p>사내표준에 의하여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이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p>
<p>비고</p> <p>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 표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 표시품,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 기록 등으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p> <p>2.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다. 공정·제조설비 관리

심사사항 주요설비명	구비요건			
	검사 또는 관리 항목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	이행사항	제조작업표준
<p>표준에서 정한 주요 공정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p> <p>1. 방화유리</p> <p>1.1 내열 강화유리</p> <p>1) 절단설비 2) 면 연마설비 3) 세척, 건조설비 4) 마크표시설비 5) 내열강화설비 6) 열간유지설비 (Heat Soak)</p> <p>1.2 세라믹결정화유리</p> <p>1. 방화유리</p> <p>1.1 내열 방화유리</p> <p>1) 절단 2) 면 연마 3) 세척건조 4) 마크표시 5) 내열강화 (1) 가열 (2) 냉각 6) 표면압축응력 7) 열간유지시험 (Heat Soak)</p> <p>1.2 세라믹결정화유리</p> <p>1) 배합공정 2) 용해공정 3) 성형공정 4) 서냉공정 5) 절단공정 6) 마크표시</p> <p>2. 금속제 창틀, 문틀</p> <p>1) 절단 2) 성형(절곡) 3) 가공 4) 표면연마 5) 도장 6) 조립 (1)용접 조립 (2)이외 조립 7) 방화유리장착 8) 봉착 9) 표시</p>	<p>단체표준에 따른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p>	<p>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 하고 있어야 한다.</p>	<p>사내표준에 따라 검사, 관리를 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고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p>	<p>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p>
<p>비 고</p> <p>1. 공정에 대해서는 외주가공을 허용하되,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증단체는 공장심사 시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p> <p>2.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p> <p>3.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p> <p>4. 1항의 방화유리 제조업체는 모든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p> <p>5. 2항의 금속제 창틀, 문틀 제조업체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설비만 보유해도 된다.</p>				

라. 제품 관리

심사사항 검사 항목	구비요건			
	제품 설계 및 개발 절차계획	제품 품질검사 항목	검사방법	이행사항
<p>표준에서 정한 품질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p> <p>1. 방화유리</p> <p>1.1 내열 강화유리</p> <p>1) 걸모양</p> <p>2) 만곡</p> <p>3) 모양및치수</p> <p>○ 모양 변의 길이</p> <p>○ 두께</p> <p>○ 한 변의 길이</p> <p>4)표면압축응력</p> <p>5)내화성능</p> <p>○ 차 열</p> <p>○ 비차열</p> <p>6)표시</p> <p>1.2 세라믹결정화유리</p> <p>1)KSL 2012에 규정된 전항목</p> <p>2) 내화성능</p> <p>○ 차 열</p> <p>○ 비차열</p> <p>3)표시</p> <p>2. 금속제창틀, 문틀</p> <p>1) 치수</p> <p>2) 비틀림강도</p> <p>3) 연직하중 강도</p> <p>4) 개폐력</p> <p>5) 개폐반복성</p> <p>6) 내충격성</p> <p>7) 방음성</p> <p>8) 단열성</p> <p>9) 방화성</p> <p>10) 차연성</p> <p>11) 내풍압성</p> <p>12) 기밀성</p> <p>13) 수밀성</p>	<p>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절차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p>	<p>제품의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해야 하고, 제품의 품질기준은 단체표준에서 정한 품질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p>	<p>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단체표준에 규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p>	<p>가) 사내 표준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이행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유지해야 한다.</p> <p>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p> <p>다) 제품시험 검사자가 단체표준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p>
<p>비 고</p> <p>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p> <p>2. 제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p> <p>3. 심사원은 제품 시험검사자의 시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주요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p>4. 공장심사와 별도로 제품의 설계평가가 필요한 경우,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p>				

마. 시험·검사설비 관리

주요설비명	구 비 요 건
<p>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주요 시험·검사설비를 포함하여 시험·검사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p> <p>1. 방화유리</p> <p>1.1. 내열강화유리</p> <p>1) 치수측정기구 (1) 결함측정기구 (최소눈금 0.5mm의 금속제 곧은자) (2) 길이, 너비측정기구 (최소눈금1mm의 금속제 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자) (3) 두께측정기구 (0.01mm까지 측정할수 있는 외측마이크로 미터)</p> <p>2) 만곡측정기구(틈새계이지)</p> <p>3) 표면압축응력측정기</p> <p>4) 파쇄시험장치</p> <p>1.2 세라믹결정화유리</p> <p>1) 치수측정기구 이외 (1) 겉모양 검사대 (2) 직각자 (3) 확대경 (4) 파상시험 장치 (5) 분광측정기 추가 보유</p> <p>1.3 내화시험설비</p> <p>(1) 수직가열로 (2) 차연성시험설비</p> <p>2. 금속제 창틀, 문틀</p> <p>1) 치수 측정기 2) 비틀림강도 시험설비 3) 연직하중강도시험설비 4) 개폐력 시험설비 5) 개폐반복성 시험설비 6) 내충격성 시험설비 7) 방음성 시험설비 8) 단열성 시험설비 9) 방화성 시험설비 10) 차연성 시험설비 11) 내풍압성 시험설비 12) 기밀성 시험설비 13) 수밀성 시험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단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 측정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도 및 정확도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 및 외부공인기관을 이용한 의뢰 시험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p>비 고</p> <p>1.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주요시험·검사설비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p> <p>2. 제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인시험기관을 제외한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 시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p> <p>1항 방화유리의 1.3, 2항금속제 창틀, 문틀의 2)~13)설비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사용계약에 의거 외부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p>	

바. 소비자 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1)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례를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2) 환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표준에 따른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업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생산·품질경영부서의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업종과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품질관리 담당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및 시험업무 관장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호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n)	판정기준		비 고
				Ac	Re	
1	겉모양	인증 구분별 재고량	1	0	1	외부 시험
2	만곡		1	0	1	"
3	모양 및 치수		1	0	1	"
4	표면압축응력		1	0	1	"
5	내화성능					
	o 차열		2	0	1	"
	o 비차열		1	0	1	"
6	표 시 (세라믹결정화유리는 KSL 2012에 규정된 전항목 표시)		1	0	1	"
7	비틀림 강도		1	0	1	"
8	연직하중강도		1	0	1	"
9	개폐력		3	0	1	"
10	개폐반복성		1	0	1	"
11	내충격성		1	0	1	"
12	방음성		1	0	1	"
13	단열성		1	0	1	"
14	방화성		1	0	1	"
15	차연성		1	0	1	"
16	내풍압성		1	0	1	"
17	기밀성	1	0	1	"	
18	수밀성	1	0	1	"	

- 비고 :1. 시료채취의 규격은 인증신청 종류별 재고량중에서 제품의 최대규격으로 채취하며 이는 전체 호칭으로 같음한다.
2. 내화성능시험에서 차열, 비차열은 제조사의 신청에 따라 각각 n=1을 적용한다
3. 1년마다 실시하는 제품심사 시에는 내화성능에 따른 대표적인 1개의 종류만 제품시험하며, 결과는 품목 전체를 대표 한다. 단 시료채취시 해당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가름 활용한다.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아.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별표 4. 인증받은 자의 처분 3. 표준별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의 품목별 세부사항에 따른다.

자. 단체표준 인증표시

상품의 단위	표시 장소	표시 방법	표시 내용
1. 매 제품 마다 (방화유리 해당)	제품표면(모서리)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엣칭, 스프레이, 구 워붙임 등)	1. 규격 표시도표 : 단체표준마크 지름 5mm이상 30mm 이하 2. 종류(내화성능/한글표기)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4. 제조국의 국명(국산품의 경우 표시를 생략해도 됨)
2. 매 포장 또는 파레트 마다 (금속제 창틀, 문틀 해당)	잘보이는 곳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인쇄, 압인, 증지 등)	1. 규격 표시도표 : 단체표준마크 지름 10mm이상 30mm 이하 2. 단체표준명 및 표준번호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제조년월일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인증단체명 7. 제조국의 국명(국산품의 경우 표시를 생략해도 됨)

차. 제품의 인증구분

단체표준번호	표준명	종류 또는 기호
KFGIA-001	방화유리	1. 모양에 따른 구분 평면 방화유리 2. 방화유리 종류에 따른 구분 - 방화유리창(고정창) - 발코니 난간부착 방화유리창 - 갑종유리 방화문(여닫이형-편개) - 갑종유리 방화문(여닫이형-양개) - 갑종유리 방화문(미닫이형-편개) - 갑종유리 방화문(미닫이형-양개) - 인접창부착 유리방화문 3. 내화성능에 따른 분류 1) 비차열 (30분, 60분, 90분, 120분) 2) 차 열 (30분, 60분, 90분, 120분)

비고 :1. 인접창부착 여닫이편개 또는 양개를 인증받은 경우 여닫이 편개 또는 양개를 포함한다.
2. 인접창부착 미닫이편개 또는 양개를 인증받은 경우 미닫이 편개 또는 양개를 포함한다.

카. 시료채취 내역

표준 번호	품목	종류·등급	재고량 (m ²)	시료 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SPS KFGIA 001-1749	방화유리	갑종유리방화문 여닫이형-양개	0 SET	시료크기 : n=2	-	※SPS-KFGIA-001-1749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에 따름 ※국토해양부고시 2012-552호 (2012.08.22)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대표 성적서로 대체 ※성적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방화유리창(비차열 60분) 성적서-1: 2014.01.28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갑종유리방화문(여닫이형-편개) 성적서-2 :2014.02.25 KCL -갑종유리방화문(여닫이형-양개) 성적서-3 :2014.08.1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KS Q ISO 24153(랜덤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에 따름

3. 공시체 제작방법

- 공시체제작방법 : -
- 공시체 규격 : -
- 제작자 : -

4. 시험의뢰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로 확인 하였음.

20 년 월 일

인증심사원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판유리창호협회

입 회 자

(인) 대 표 자

(인) 품질관리담당

(인)

(인)

2.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

가.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 일반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6)까지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단체가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 1)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별지 제1호 인증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 2) 품목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 단체표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
-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 5) 제품인증표시 방법
- 6) 제품의 인증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등

나.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에서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 단체표준번호
- 2) 단체표준명
- 3) 제정 연월일
- 4) 개정 연월일(개정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인증 심사 결과 판정 기준

1. 적용범위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후관리,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판정기준

가. 공장심사(인증심사/사후관리)

-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80점(80%) 이상일 경우 합격, 60점(60%) 이상일 경우 보완, 60점(60%)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핵심필수항목 : 5.0점, 만족시 5 점, 보완 2.5점, 부적합 0점
 - 일반품질항목 : 2.5점 만족시 2.5점, 보완 1.5점, 부적합 0점

나. 제품심사

- ① 인증/사후관리(정기심사,사후심사,특별공장심사,제품시험표준심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단체표준의 인증기준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 ② 시판품조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단체표준의 인증기준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비고] 인증심사기준은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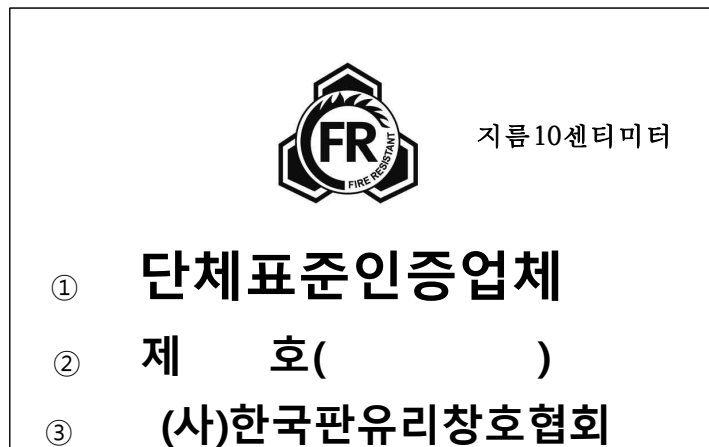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1. 단체표준 인증마크

		
SPS-KFGIA-001-1749	SPS-KFGIA-002-1799	SPS-KFGIA-003-2005

①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0조 2항 6호 [별표13] 단체표준인증표시도표에 의한다.

2. 표 시 판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cm, 세로 32cm 크기로 한다.
2. 표시판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로 한다.
3. 마크및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마크의 경우 제품별로 상이함)
4. 표시판 상하부에 연회색으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음영을 줄 수 있다
5. 인증 품목이 2개 이상인 때는 가로 45cm, 세로10cm의 보조표시판에 인증번호와 인증 품목명만을 기재하여 게시하되, 그 위치는 정문표시판 아래에 게시한다.
- 6 ①의 크기는 세로의 12분의 1 문자는 고딕체로 한다.
②의 크기는 세로의 15분의 1 문자는 명조체로 한다
③의 크기는 세로의 12분의 1 문자는 명조체로 한다.

인증 받은자에 대한 처분 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또는 연속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제33조 1항에 따라 인증 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 라. 제36조 1항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제품시험표준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가. 제34조에 의한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제35조에 의한 자료제출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개선권고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나.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1) 3개월 이상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2) 6개월 이상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다.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라.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 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마. 제24조에 따른 공장심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1) 결과가 60점 이상 ~ 80점 미만	개선권고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2) 결과가 60점 미만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바. 제21조에 따른 제품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1) 부적합 항목이 발생된 경우	재심사 재시험			
(2) 검사항목별 결함수준에 따라 처분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등)	경결함일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6개월)	인증취소
	중결함일경우	개선권고	인증취소	
	치명결함일경우	인증취소		

3. 표준별 경결합, 중결합, 치명결합의 품목별 세부사항

(제36조 1항관련)

표준번호	표준명	검사항목	경결합	중결합	치명결합	비고	
SPS-KFGIA-00 1-1749	방화유리	1.겉모양	○			유리	
		2.만곡	○			유리	
		3.모양 및 치수	○			유리	
		4.내화성능		○		완제품	
		5.표시	○			유리	
SPS-KFGIA-00 2-1799	가스주입단열 유리	겉모양	○				
		모 양	○				
		이슬점		○			
		단열성능	○				
		가스 함유율	80≤함유율 %<85	○			
			70≤함유율 %<80		○		
			함유율 %<70			○	
		내후성후 누출율 5%초과	가스함유율%≥80	○			
			가스함유율%≥70		○		
			가스함유율%<70			○	
		광학박막성능의방사율	○				
치 수	○						
표 시	○						
SPS-KFGIA-00 3-2005	강화유리 히속 테스트 방법	겉모양	○				
		히속테스트		○			
		치 수	○				
		표 시	○				